

○복개 구조물 설치로 홍수시 유수장애를 일으켜 수위상승 요인이 되어 재해발생 우려.

○하천 복개로 구조물내 준설 및 청소, 보수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경제적 부담 가중

나. 안전한 주거공간

○하천 복개상·건물이 장기간 사용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위험 상존

○위험요소 상존으로 시설물 보수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대책 필요

다. 정당한 재산권 보장

○지상권 연장후 건물이 위험하여 사용제한·금지할 시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지상권 만료후 건물이 위험하여 지상권 설정자(서울시)가 계약갱신 거부후 보상할 시 지상권자(건물소유주)는 상당가액으로 보상함.

V. 細部 推進計劃

가. 지상권 연장불허(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

- 대상 : 11개동 66,148㎡
- 추정소요액 : 481억 9,200만('99~2003)
- 예산조치 : 소요예산은(자치구요청)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예산 반영 추진

나. 공공시설물(복개구조물) 안전진단 및 긴급보수

○소요예산 : 1억 6,800만원(재해대책기금 활용)

다. 하천정비

○건물철거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조, 별도 추진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검토보고요지

1. 조례개정안 제출근거 검토

시민생활에 관련된 규제사항을 개혁하기 위하여 육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홍보물 설치수량 제한사항을 철폐하고 사용기간을 폭넓게 허용하며 육교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조

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개정조례안 검토

가. 제8조(설치수량의 제한) 삭제

각 구별 설치수량을 3개소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삭제하여 시민이 원하는 만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으려 규제조항을 삭제한 것임.

나. 제9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개정내용

(1) 제1항 : 사용기간 확대

육교의 사용기간이 14일 이내,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 연장 가능하였던 규정을 개정하여 육교사용 허가기간을 행사개시일 30일 전부터 행사종료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행사전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행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됨.

(2) 제2항 :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년 사용기한 철폐

장기간 게재가 필요한 홍보물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 사용 허가기간을 철폐한 것은 바람직하나 장기간 홍보물을 게재할 경우 광고물의 특성상 「안전도 문제」와 「노후화에 따른 도시미관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본 조례를 “서울특별시육교광고물등관리조례”에 통합·폐합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제3항 : 육교사용료의 형평성 고려

육교를 사용하여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게재한 시민보다 낮은 1/2수준에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것을 일반 광고물의 점용료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4) 제4항 : 미사용 육교사용료의 반환

육교사용료를 납부한 후 육교사용허가를 사용개시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의 1/2을 반환토록 한 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고 개

정하고 있으나 허가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 후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 요구할 경우까지 반환한다면 육교사용을 필요로 하면서도 허가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다른 시민의 불이익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사용료의 반환은 허가의 철회 또는 허가면적이나 허가기간의 변경허가에 의한 것이므로 수허가자의 철회 또는 허가내용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조건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제5항 :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 조항 신설

사용료 부과·징수개념이 도로점용료와 같으므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는 조례의 준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기타

(1) 조례 제7조(허가의 취소)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이 없음.

- 허가의 취소이므로 기납부한 사용료를 몰수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으나
- 별도의 벌칙조항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벌칙근거도 없이 납부한 사용료를 몰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임.

종합의견

1. 조례 제7조(허가의 취소) 개정 필요
 조례 제4조제4항의 경우는 육교 사용허가 후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육교사용을 권유하였으나, 수허가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조례 제9조에 의거 반환토록 하였으나, 조례 제7조(허가의 취소)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경우는 기납부한 사용료 반환조항이 없으므로 제7조 후단 또는 제9조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개정조례안 제9조제4항의 보완
 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 4항은 사용허가의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수허가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철회하거나 사용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와 제7조에 의한 허가취소의 경우를 포함하여 육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 8 조를 삭제한다.

제 9 조제1항중 “사용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제1회에 한하여 7일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사용기간은 행사개시일 30일전부터 행사 종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1년의 범위안에서 육교사용을” “육교사용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점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점용료에 해당하는 사용료”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철회하거나 사용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와 제7조에 의한 허가취소의 경우를 포함하여 육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⑤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육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육교사용 허가신청이 접수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